

2020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목차

- I 국가근로장학금이란?
- II 근로진행 절차
- III 장학생 유의사항
- IV 방학 집중프로그램 안내
- V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 VI 장학생 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소개



I 국가근로장학금이란?

< 국가근로장학금 사업목적 >

- 1**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생활비 지원
- 2**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 3**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제공
- 4** 취업역량 제고

<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발 >

기본조건

- 1**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라면 가능
※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대학에 문의
- 2**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학생들 대상
※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선발될 수 있습니다.
- 3** 직전학기 성적이 **C⁰(70점/100점)** 이상

선발과정

선발기본요건
충족



대학자체
선발기준



장학생
최종선발

< 근로가능시간과 시급 >

근로가능시간

▶ 최대 근로가능시간

1일 최대	주당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중	방학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이며, 분 단위 근로 인정 안됨

▶ 대학별 운영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근로장학금 시급

▶ 교내근로 : 9,000원

▶ 교외근로 : 11,150원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교내/교외 근로로 구분

< 국가근로유형 알아보기 >

**일반교내
근로유형**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
유형**
(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일반교외
근로유형**

※ 봉사유형은 수업시간 내 근로 인정
(수업지원을 위해 근로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자 및 근로기관에 문의)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제한시간 미적용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목적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입(2015년)

주요활동

장애대학생 이동 지원, 강의·보고서·시험대필 등 학습 지원, 의사소통 지원 활동 등

유의사항

- V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전문교육 반드시 이수
- V 대학의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됨
- V 수기출근부 작성 필수
- V 일/주당 근로가능시간은 일반근로와 동일
- V 장애대학생 학습지원을 위해 근로장학생이 동일과목 수강 시, 해당 수업시간 내 근로를 인정
- V 수업시간 내 근로 활동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자 또는 근로기관에 출근부 등록 요청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

목적

외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주요활동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통역지원, 행사지원 등

유의사항

-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됨
- 수기출근부 작성** 필수
- 일/주/학기당 근로가능시간은 일반근로와 동일
- 외국인유학생의 **학업보조를 위해** 근로장학생이 동일과목 수강 시, **해당 수업시간 내 근로를 인정**
- 수업시간 내 근로 활동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자 또는 근로기관에 출근부 등록** 요청

< 취업연계유형 >

목적

장학생의 근로경험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적 체계 마련 및 취업연계 활성화

종류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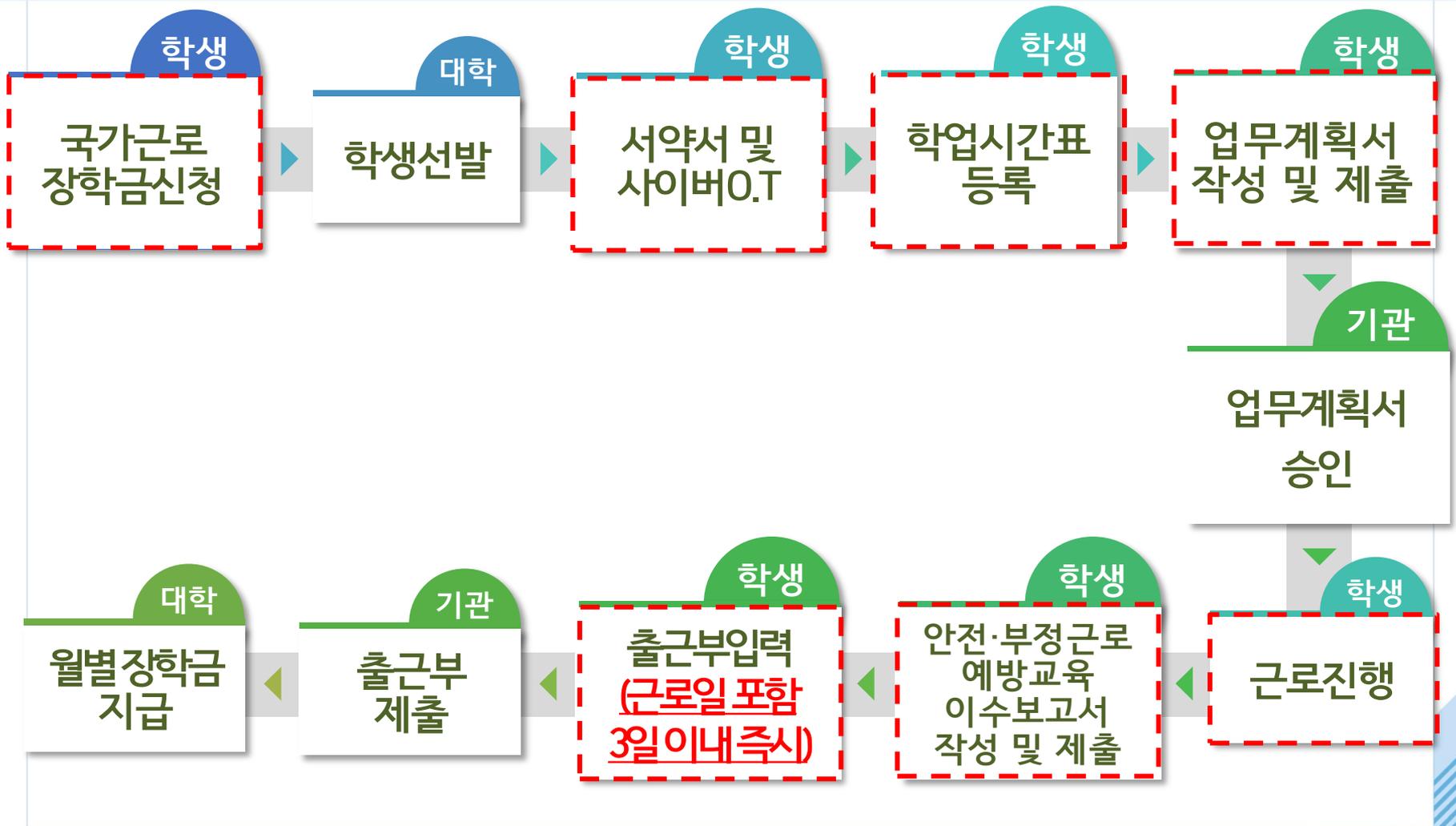
- 취업연계중점대학 및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을
운영하는 대학 리스트 확인
- 주 40시간 근로가능, 학기당 시간 제한 없음
- 등록된 시간표가 있을 경우, 해당 시간동안 근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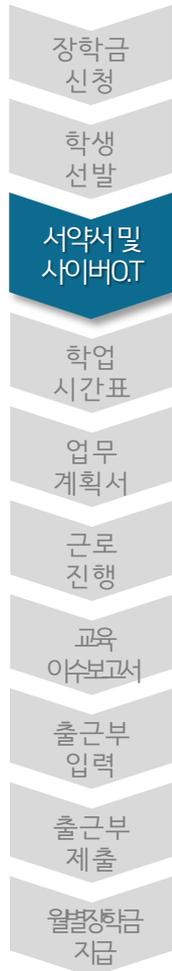
II

근로진행절차

국가근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서약서 확인과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가 가능
- 서약서 확인 시, 장학생 본인명의로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으로 선발된 경우,
 - ①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이버오리엔테이션과
 - ②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전문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필수
 - ※ 서약서 확인,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업무계획서 제출 및 기관 승인, 안전 및 부정근로 교육이수 보고서를 제출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가능

< 진행절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국가근로장학금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분들은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확인

● 국가근로장학생 사이버오리엔테이션

강의명	진도율	강의보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이버오리엔테이션	100 %	강의보기

서약서 보기 >

서약서 확인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4. (근로시간) 본인은 원칙적으로 근로활동시간이 9~18시(휴일 제외)를 준수하며, 이와 시간외 근로활동이 진행될 경우 근로 시작 전에 대학 및 근로장학금 관리처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최대 근로시간 기준(주간: 학기를 주당 28시간, 방학중 주당 48시간, 학기말 48시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재외사용자가 아닌 거주자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7. (배제) 본인은 부정근로 등 아래 의무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제재 및 대학상 근로장학생(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상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일부학생 연료지원장학금)에 모두 참여제한됨에 유의합니다.

가. 부정근로
- 학기초: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학생등록부처 2년 참여 제한
- 다문화: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학생등록부처 2년 참여 제한
- 다문화: 근로중지, 학생등록부처 2년 참여 제한

나. 부정직: 선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선별된 경우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8. (반환율) 본인은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장학금을 대학에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 근로지 구별(국내·외교) 교육학에 따른 초과근로
나. 대학이 장학금 지급시 명세서에 실수로 인한 초과지급분
다.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받은 금액과도 인정되는 경우

9. (이행불능 협의) 본인은 근로기준(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직장활동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한 근로장학금 관리처를 지원·유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사전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경우 환수 및 제재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10. (제외사항) 본인은 아래의 주요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가. 용서여 부주의 근로장에서 근로활동이 불가함
나. 용서여 부주의 종료로 발생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학업시간과 종료후로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기초부터 인정할 수 있음

11. (탈락) 본인은 대학 또는 개인이 근로활동 운영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 또는 실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포 제정, 명단 등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2. (사입제척 및 업무제거기준 준위) 본인은 국가근로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제거기준을 준수하고, 유 사유 부처에 따라 근로장학금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3. (중복참여 금지) 본인은 대학상 근로장학생(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상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일부학생 연료지원장학금)간 중복참여가 불가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제재사유
확인

소속 대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기간 확인(신청기간 내)

1 서약서 보기 클릭 후, 내용 및 근로장학생 제재사유 확인

※ 해당 내역을 꼼꼼히 확인 후, 서약서에 동의해주세요. 서약서 내용은 학기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서약서 확인 시, 본인명의로 공인인증서 필요(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생략)

< 진행절차 >

홈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국가근로장학금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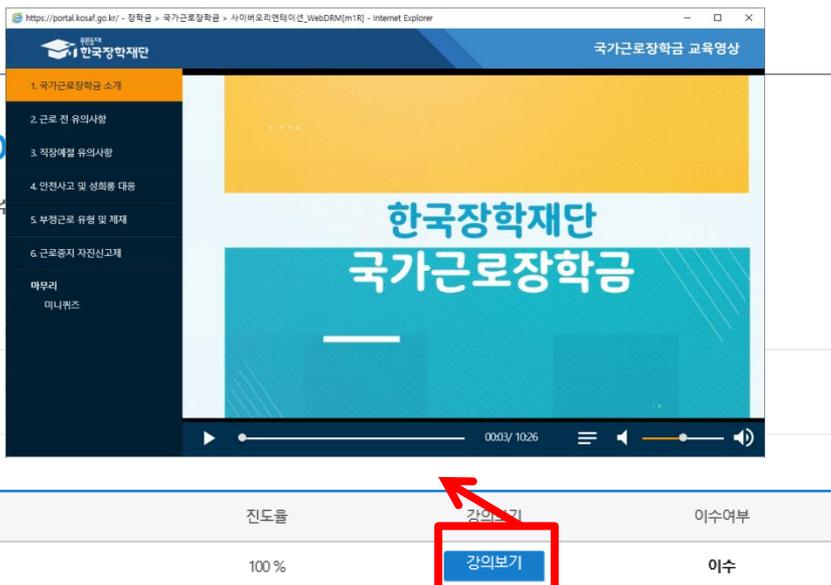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분들은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확인

○ 국가근로장학생 사이버오리엔테이션

강의명	진도율	강의보기	이수여부
국가근로장학금 사이버오리엔테이션	100%	강의보기	이수



- 1 강의를 시청 한 후, 미니퀴즈(3문제) 풀기
- 2 강의이수 후, 이수여부에 '이수'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 서약서 확인 후, 강의시청 가능

< 학업시간표 >



- 대학에서 설정한 시간표 입력기간 동안 시간표 등록가능
- 선발 시, 학업시간표가 등록되어있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
 - ※ 학기 중은 학기 중 수업시간표,
방학 중은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해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 ※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정확한 수업시간표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수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학업시간표에 등록한 시간에 근로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 입력 또한 불가
 - ※ 일시적인 휴강에 근로한 경우, 근로로 인정하지 않음
 - ※ 봉사유형의 경우 대필 등 수업시간 내 근로 인정되나
소속대학 담당자 또는 근로기관 담당자가 등록할 수 있음

< 진행절차 >

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학업시간표관리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학업시간표관리 ▾
 + - 📄 📱 📧 📧

학업시간표 관리

※ 학업시간표 등록 및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소속 대학 담당자에게 문의

○ 학업 시간표 관리

검색 조건 2020 ▾ 년 2 ▾ 학기 정기학기 ▾ 조회 >

· 학업 시간에는 근로업무를 하실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학업시간표 입력

구분	요일	수업시간		수강과목
		시작	종료	
1	선택 ▾	선택 ▾ : 선택 ▾	~ 선택 ▾ : 선택 ▾	<input type="text"/>

추가 >

삭제

저장 >

1 왼쪽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시간표를 입력한 후, 저장

※ 실제 대학 학사시스템 시간표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강의, 실습시간표 등 특수한 시간표가 있을 경우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획서 >



- 홈페이지에 근로 예정인 내용을 작성 후 제출
- 업무계획서는 **실제로 하게 될 업무**를 상세히 작성
- 휴게시간 등 서로 협의한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근로지 담당자와 내용 확인 및 협의 후 업무계획서에 내용 명시
- 업무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제출한 후,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출근부 작성 가능함**

< 진행절차 >

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업무계획서관리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업무계획서관리 ▾

 + - 🖨️ 📱 🌐

업무계획서 관리

※ 업무계획서 승인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문의

○ 업무계획서를 제출 및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계획서 조회

검색 조건(장학년도-학기) 2020 ▾ 년 2 ▾ 학기 검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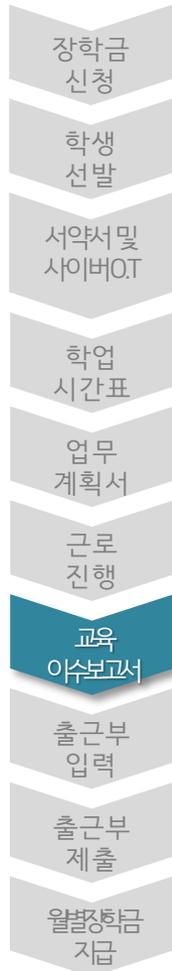
선택	순번	진행상태	장학년도	학기	근로기관명	근로지명	근로세부유형	근로기간	최종제출일
<input type="radio"/>	1		2020						

※ 선택을 클릭하시면 제출하시고자 하는 근로지의 업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근로 예정인 기관을 선택하여 근로기간 설정 후, 근로시간(예상)입력

※ 실제로 하게 될 업무를 상세히 작성

< 교육이수보고서 >



-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 이수보고서를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출근부 작성 가능
-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시, 교육사진 첨부 필수
-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이 기입된 안전교육이수보고서만 인정
- 교육 이수시간의 경우, 최소 1시간 이상 근로시간으로 인정
※ 단, 출근부 입력 시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 명시

< 진행절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관리**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조건	년	학기					검색
선택	순번	년도	학기	근로기관명	근로지명	제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1					미제출	

※ 반드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이 기입된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만 인정됨.

1 오른쪽 하단의 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한 후, 근로지에서 받은 교육내용을 작성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이수보고서

작성일자	20XX . . .	근로장학기관명	
교내외 구분		근로지(부서)명	
대학명		성명	
학과		학번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담당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자유 기재(교육사건 첨부 필수)

***[참고] 부정근로 유형**

유형	정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내역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내역근로	정확성이 아닌 유급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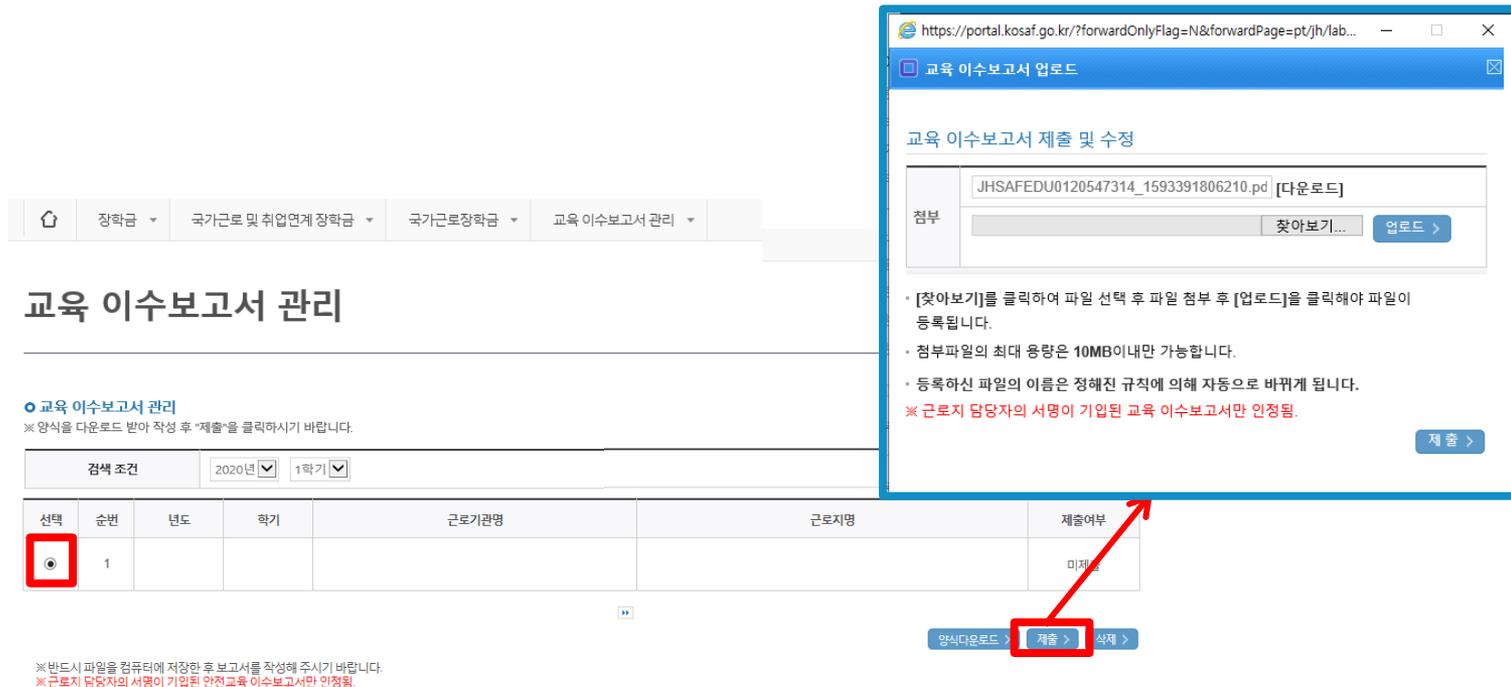
*부정근로 발생할 경우 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참여 제한(기공 및 장학금, 대리근로자 제외)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대학(교) () 학부(과) 성명 : (서명)
 근로지(부서) 교육담당자(책임자) 성명 : (서명)

※ 교육 이수사건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장학금은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단홈페이지에 업로드(홈페이지 → 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 진행절차 >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조건: 2020년 | 1학기

선택	순번	년도	학기	근로기관명	근로지명	제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1					미제출

※ 반드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이 기입된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만 인정됨.

양식다운로드 > **제출 >** 삭제 >

교육 이수보고서 업로드

교육 이수보고서 제출 및 수정

JHSAFEDU0120547314_1593391806210.pd [다운로드]

첨부: [찾아보기...] [업로드 >]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파일 선택 후 파일 첨부 후 [업로드]를 클릭해야 파일이 등록됩니다.
- 첨부파일의 최대 용량은 10MB이내만 가능합니다.
- 등록하신 파일의 이름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 ※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이 기입된 교육 이수보고서만 인정됨.

제출 >

2 교육이수보고서를 제출할 근로지를 선택 후, 제출

< 유의사항 >



- **근로 후 즉시(근로일 포함 3일 이내)**에, 근로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출근부 입력해야 함
- **근로일 포함 3일이 지난 후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 예시 : 20일에 근로한 내용은 22일까지 입력가능
- 학기 중 근로 시,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시간에** 근로한 내용은 입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 입력 또한 불가**
 - ※ **일시적인 휴강**에 발생한 근로도 인정하지 않음
 - ※ 단, 봉사유형은 근로장학생이 수혜대학생과 동일 학업시간에 수업지원을 위한 근로활동이 가능하나, 본인 입력이 불가하므로 소속대학 담당자 또는 근로기관 담당자가 등록 가능

< 유의사항 >



- 1일/주당/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장학금 수령 불가
Ex) 1일 10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입력가능
※ 분단위 근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
 - 출근부 입력 시, 장학생 본인명의로의 공인인증서 필요
 - 근로지 담당자가 장학생이 작성한 출근부를 매일 “확인”하고, 월말에 “대학제출 처리”를 하여야 해당월의 출근부가 인정되어야 대학은 장학금 지급이 가능
- ※ 대학 및 장학생은 근로지 배정 후 이와 같은 내용을 근로지 담당자에게 재확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 진행절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관리 ▾

출근부관리

* 출근부는 근로일 포함 3일 이내만 입력 및 수정 가능

○ 출근부를 달력이나 리스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 2020 ▾ 년 2 ▾ 학기 2020년 09월 ▾ [조회 >](#)

○ 누적활동시간

구분	누적활동시간	최대제한시간

* 근로지유형별 제한시간까지 근로가능하며, 학기 최대 제한시간은 참여 유형 중 제한시간이 가장 큰 유형에 따름

○ 월출근부

선택	근로년월	근로장학기관명	근로지명	장학금	지급일자	기관 승인구분	대학 승인구분	-
<input type="checkbox"/>				0		미제출	미승인	출근부입력 >

1 출근부를 입력할 근로지를 선택 후, 오른쪽의 출근부 입력 버튼 클릭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누적활동시간을 잘 확인할 것

< 진행절차 >

○ 출근부조회

- 각 날짜를 클릭하면 출근부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 입력하신 출근부에 출근을 누르시면 **일별출근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 출근부는 근로종료시간 이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출근부리스트 >](#)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4 empty	5 empty	6 empty	7 empty
11 empty	12 today	13 empty	14 empty
18 empty	19 empty	20 empty	21 empty
25 empty	26 empty	27 empty	28 empty
			29 empty
			30 empty

일별 출근부 입력 - Internet Explorer

일별 출근부 입력

선택	순번	시작시간	종료시간	근무시간	근무구분	근로내용
조회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작시각	종료시각	근로구분	근로내용
9 ▾ 00 ▾	9 ▾ 00 ▾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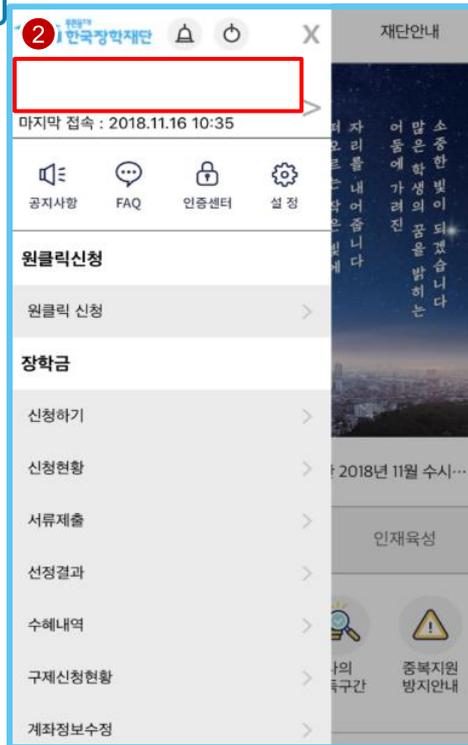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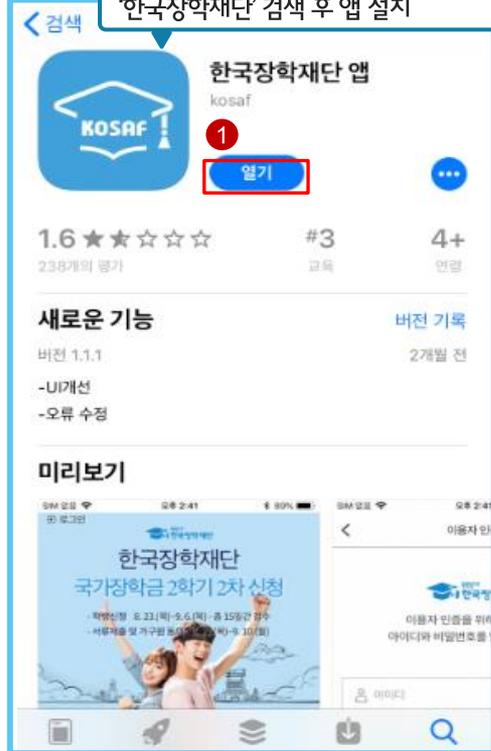
[저장 >](#)
[삭제 >](#)
[닫기 >](#)

② 달력에서 근로날짜를 클릭하여, 일별 출근부 입력

- ※ 근로시작 및 종료시간은 5분단위로 지정 가능. 정확한 시간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부정근로로 적발될 수 있음
- Ex. 9시 25분에 출근한 경우, 시작시간을 9시 25분으로 입력

< 진행절차 >

플레이스토어(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검색 후 앱 설치



메인 >> 장학금 >> 출근부등록

< 진행절차 >

< 출근부 등록

나의 출근부

- 국가근로장학 >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 참여제한 관리 >

< 출근부 등록

국가근로장학

년도, 월 선택

*출근부: 근로일 포함 3일 이내만 입력 및 수정 가능

2020 년 08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로 일자 선택

3 출근부 입력

근무일자

근로기관/근로지명

근로시작 09 시 00 분

근로종료 09 시 00 분

근로구분 주간

근로내용

4

저장 취소



III

장학생 유의사항

< 이럴 땐 근로할 수 없어요!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동시참여불가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학적 상태가 '재학' 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된 경우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 적발 시

< 근로기관을 처음 방문했어요! >

국가근로장학생 기본예절

근로장학생은 대학의 얼굴입니다!

- 1 출근시간 전에 일찍 도착하여 하루 일과 계획하기
- 2 사무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하기
- 3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 삼가
- 4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업무태도 가지기
- 5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외의 행동 지양하기
- 6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간단한 인사 후 퇴근하기

기관을 처음 방문했어요!

월별 출근부 제출 안내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1 매월 말 회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를 대학제출 해야 함
- 2 월별 출근부 제출 이후, 장학금 지급 가능
- 3 근로기관의 월별 출근부 제출이 늦어지면 전체 학생의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기
※ 대학별 출근부 제출 일자 상이

< 여행 및 군복무 계획이 있다면! >

근로중지 자진신고제

해외여행 등으로 근로를 중단할 경우, 이용해주세요!

- 1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 2 근로 중, 해외여행, 군복무 등이 계획되어 있다면 사전에 대학 담당자에게 안내
- 3 대학 담당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본인 명의의 전자항공권, 탑승권 등)
※ 본인 이름, 날짜, 출도착시간 등이 명확히 보여야 함

< 근로기관 및 근로지와 가족관계라면! >

근로기관 (근로지)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장학생은 매칭되거나 매칭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또는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안내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으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과 장애대학생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



IV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안내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이란?

사업목적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에서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개발의 기회 제공

- ※ 재단이 전국 단위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며, 근로장학생은 방학기간 중에 다양한 분야의 근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방학기간에 귀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역량 개발 단절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하계 7월~8월 동계 1월~2월

참여대상

대학 해당년도 국가 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대학

학생 해당년도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대상 대학의 재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기신청자

진행절차





V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 부정근로란? >

출근부입력시 장학생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 및 시간과 다르게 허위로 입력한 경우

허위
근로

대체
근로

대리
근로

- ※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장학금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근로 예시 >

허위 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하던 근로장학생 A군은
근로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나가거나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실제로 근로는 하지 않고 출근부만 기록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A군은 근로는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여 장학금
을 받은 허위근로에 해당한다.

장학금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부정근로 예시 >

대체
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P군은
1월 3일에 근로해야 하지만 1월 7일로 바뀌어 근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출근부를 입력할 때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1월 3일에 출근부를 입력하였다.

P군은 입력한 출근부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근로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부정근로 예시 >

대리 근로

선발된 장학생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C양은 늦잠을 자느라 그만 학교에 가지 못해 친한 친구 G양에게 오늘 하루만 본인 대신 근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한 친구의 부탁에 G양은 C양 대신 중앙도서관에서 대신 근로를 하였다.

C양은 선발된 장학생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한 대리근로에 해당된다.

장학금환수 및 대리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시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부정근로 학생제재 >

※ 유형별 부정근로 제재기준은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허위근로

확정일로부터 근로 중단 및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불가**

대리근로

확정일로부터 근로 중단 및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불가**
 (대리근로의 경우,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불가**
 ※ 사업참여제한의 경우,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전체 불가

< 부정근로 기관제재 >

※ 유형별 부정근로 제재기준은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근로기관에 대한 조치

	1차	2차
교외근로기관	서면 경고	참여 제한 (최대 2년)
교외근로기관의 근로지	참여 제한 (최대 2년)	

- 1 허위근로 적발 시, 확정일로부터 2년간 사업참여 불가
- 2 대체,대리근로 적발 시, 확정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불가

※ 자격 해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을 시킬 수 있음

※ 사업참여 제재 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 공공재정 환수법 >

※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행) 부정이익 원금만 환수 → (개편) 원금 + 이자 + 제재부가금 + 연체가산금 환수

관련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공공재정 환수법 >

※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부정근로,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1 부정이익

'20. 01. 01. 이후 지급된 국가근로장학금

2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계산 방법]

-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 1천분의 18('20.03.13.)
- 이자 계산기간: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공공재정 환수법 >

※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3 재제부과금 환수범위,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 및 징수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없음

4 가산금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연체 1개월 내	연체 1~2개월	연체 2~3개월	연체 3개월 이상
연체료 2%	연체료 2% + 가산 1%	연체료 2% + 가산 2%	연체료 2% + 가산 3%

환수처리절차

공공재정환수법, 동법 시행령 환수 및 납부 절차에 준하여 처리

※ 환수범위, 환수 대상 금액 등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 안내 예정



VI 장학생 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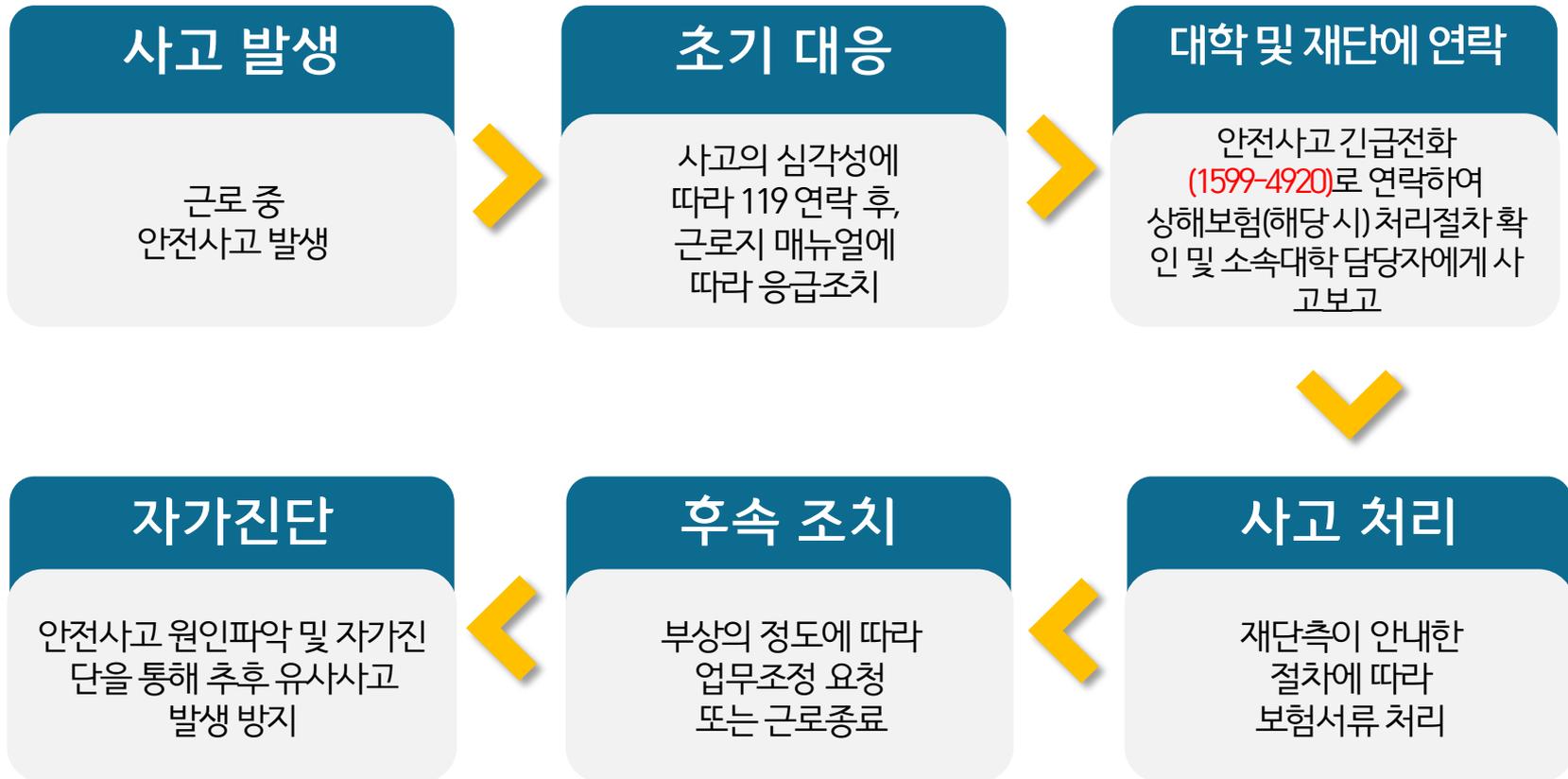
<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



교외근로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사고보고 및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 (1599-4920)**를 통해 상해보험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



< 성희롱이란? >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혹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 ▶ 재단전화: [1599-2290](tel:1599-2290)
- ▶ 피해 발생 시 : [여성긴급전화\(1366\)](tel:1366)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